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21154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442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211543 판결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3. 12. 18.

판결 선고 2014. 1.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81,055원 및 그중 49,980,884원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각 1.03/15 지분에 관한 2013.

6. 13.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각 1.03/1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7. 3. 접수 제33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4. 13. 피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D에서 2010. 4. 12. 주식회사 A로 상호변경)와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간 2010. 4. 1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매년 연장되어 2014. 4. 11.까지로 연장되었다(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2.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와 같은 구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제출하고 2009. 4.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3. 7.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50,502,79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일에 521,910원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2013. 6. 13. 기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E와 피고 B이 각 1.03/15, F이 1.04/15지분을 G로부터 상속하여 위 3인이 합계 3.1/15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E, F 피고 B은 2013. 6. 13.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위 3인의 지분 전부를 350,000,000원에 매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7. 3. 접수 제33651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바. E, F, 피고 B과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에서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6. 18.에,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6. 25.에, 잔금 115,000,000원은 2013. 7. 3.에 지급하되, 그중 22,758,500원은 피고 C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임차권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매매대금을 E, F,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잔액 49,980,884원(=대위변제금 50,502,794원-회수금 521,910원)과 회수금 521,910원에 대한 1일치 지연손해금 171원(=521,910원×연 12%÷365, 원미만은 버림)의 합계 49,981,055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49,980,8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7.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3. 1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각 1.03/15 지분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피고 B의 지분이던 각 1.03/15 지분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7. 3. 접수 제33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B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매매가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선의이면 이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는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B의 지분만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E와 F의 지분도 함께 매수한 계약이고, 그 매매대금도 350,0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피고 C이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피고 C에게 피고 B과 사해행위를 도모할 만한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C은 그 매매가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성진

별지